

KERI Brief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기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wlim@keri.org)

현행 기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 중 '자산 유지'나 '업종 유지' 규정은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은 핵심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급변하는 위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줄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이며, 과거가 되었다. 특히,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장수기업에서 생존과 성공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장수를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세법상 유사한 목적을 지닌 제도(적격합병)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구현을 위해 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

될 수 있게 기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후요건 중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계속성(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므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상속공제상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 업종유지 요건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생존하려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에 구시대적인 업종유지 요건은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하는 것이 타제도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I. 검토 배경 및 현황

□ 기업상속공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유지(계속성)’의 개념은 예전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기업 유지 측면의 사후요건을 규정

○ 시대변화에도 예전 기준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됨에 따라 기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은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 되었음

○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중분류내 허용) 등 계속성(동일성) 관련 사후요건이 엄격해서 기업들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 2016 ~ 2020년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제도 평균 이용건수는 92.8건, 공제금액 2,866억 원이지만, 독일은 연평균 9,995건, 공제금액 146억 유로(한화 약 19.6조 원)에 달함

- 까다로운 사후요건 때문에 활용도가 낮고, 독일과 비교할 때 100배 이상 적은 상황

□ 현행 업종, 자산처분 등 사후요건 대부분이 예전 계속성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 있어, 시대변화 부합 및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 자산 유지나 업종 유지 규정은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에 대한 취지가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현행 기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 개선을 제안하려 함

〈표 1〉 한국과 독일의 기업상속공제 결정 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건 수	공제금액 (백만 원)	건 수	공제금액 (1,000 유로)
2016년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년	91	222,598	9,260	20,387,105
2018년	103	234,421	8,773	11,634,555
2019년	88	236,343	9,263	12,022,511
2020년	106	421,049	12,043	7,688,724
평 균	92.8	286,558	9,995	14,631,483

자료: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chaft- und Schenkungsteuer)

II. 기업의 계속성 관련 제도의 비교·검토

1. 기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

▣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우리나라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약 25%의 2배에 달해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상황**

○ 특히,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하여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음

▣ **‘기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기업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임**

○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¹⁾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음²⁾

- 1)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3) 2022년부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되었음

〈표 2〉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건	기준	상세 내용
기업	계속경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독립성 기준을 충족 - 매출액의 평균금액(3개 연도) 4천억 원 미만³⁾ -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심사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1가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가업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취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이상의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간주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정리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기간별 추징률⁴⁾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⁵⁾

- ① 해당 가업자산의 20% 이상 처분(5년내 10%)⁶⁾
- ② 가업 종사 관련(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⁷⁾ 업종유지(중분류내 변경허용) 등] 위반
- ③ 상속인의 지분 감소
- ④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⑤ 상속 개시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가업(기업)의 계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며, 사후 기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취소하는 것임

- 이 중 20% 이상의 자산처분금지와 중분류내 업종유지 등이 대표적인 기업의 계속성 유지와 관련된 사후요건임
- 관련된 연혁을 살펴보면 업종유지의 경우 세세분류에서 세분류, 중분류로 완화된 바 있지만, 자산처분금지의 경우에는 변화된 바 없어⁸⁾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음

2. M&A 세무에서의 적격합병 기준

- M&A(Merger & Acquisition)란 기업의 합병과 인수를 의미하며, 합병은 복수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단일한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인수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발행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또는 영업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함⁹⁾

- M&A 과정에서 세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M&A 자체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도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지원 측면에서 '적격합병' 등에 대해서 과세특례¹⁰⁾를 두고 있지만, 조세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조세특례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하고 있음

4) 기간별 추징률은 다음과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

기 간	추징률
5년 미만	100%
5년 이상 7년 미만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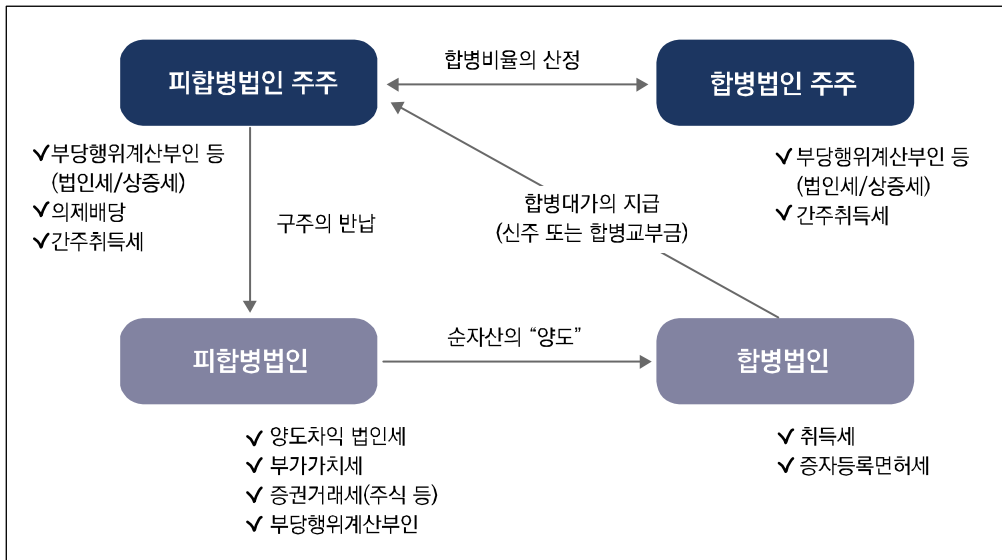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 6) 예외는 다음과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 가.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바. 제11항 제2호에 따른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7)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8) 2020년부터 업종 변경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등 예외적 처분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자산의 20% 이상 처분금지라는 근본적인 규정은 개정된 바 없음
- 9) 삼일회계법인, "M&A ESSENCE",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개발협회, 2020.8.

□ 경제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일정한 합병(적격합병)인 경우, 합병 시점에 과세이연 또는 면제 등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일반적인 과세체계 하에서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은 합병대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에 의한 의제배당(법인세, 소득세), 합병비율에 따른 이익분여(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함
- 사실상 경영 주체 및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도거래에도 불구하고 이익실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격합병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 다음 사업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및 승계받은 사업의 연속성 등 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으로 인정함

- 합병법인이 3년 내에 사업을 폐지(자산 50% 이상 처분)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취소됨

〈그림 1〉 합병에 대한 원칙적인 과세체계



자료: 삼일회계법인, "M&A ESSENCE",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0.8.

〈표 3〉 적격합병의 요건 및 내용

요건	내용
사업의 목적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지분의 연속성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시가) 중 주식 등의 가액(시가)이 80% 이상일 것 ·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 · 피합병법인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한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 미충족
사업의 계속성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할 것 · 승계사업의 폐지: 승계한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미사용 ¹⁰⁾
고용승계요건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법 소정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일 것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자료: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정리

〈표 4〉 비적격합병과 적격합병의 과세 비교

주체	비적격합병	적격합병
피합병법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 양도차익 없음(양도가액 = 장부가액) · 증권거래세 비과세
합병법인	·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한 손금(익금) 산입 · 시가 승계 ·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 신주발행 증자등록세(자본금 0.48%)	· 합병매수차손익 미인식 · 장부가액 승계(과세이연 효과) · 취득세 50% 감면 (감면 부분에 따른 농특세도 면제) ·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등록세
피합병법인 주주	· 의제배당 과세 · 과점주주취득세(요건 성립 시)	

자료: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정리

- 법인세법상 기업 또는 사업의 계속성 기준은 사업자산의 50% 이상 처분금지외 해당 연도까지 승계사업을 영위할 것 등 2가지만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분류내 업종유지'에 대해서는 요건이 없음
-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적격합병과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그 정도가 20% 이상과 50%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도 유의할 사항임

- 10)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요건 미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시대변화에 따른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의 계속성 유지

▣ 최근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라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제환경의 한가운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유연하고 더 빨리 적응해야 함

○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방식과 일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¹⁾

○ 이에 기업은 핵심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급변하는 위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줄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에 절대결명의 과제가 되었음

-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의 가치사슬을 재정비하여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하는 것임

-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강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은 품질, 비용, 배송, 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음

○ 한편,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장수기업에서 생존과 성공 전략을 찾아볼 수 있음

- 장수기업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기업이 유지되며 일자리 창출, 기술의 계승·발전, 사회 공헌을 통해 경제의 활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우량 기업을 말함

- 첫 번째, 기업의 장수를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해야 함

- 두 번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함

▣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스스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투자 노력이 감소하고 있어, 기업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기업승계를 포기하면서 축적된 기술·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경영권이 악화될 수 있음¹²⁾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세법상 유사한 목적을 지닌 제도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 '적격합병 과세특례'에서는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조세특례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하고 있지만, 자산 처분금지 요건이 50%임

- 또한 업종유지요건은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요건이 아니며 승계사업을 해당 연도까지만 영위하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임

- 세법상 계속성 기준이 30% 이상 차이나고 업종유지요건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기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1) 장석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국토 제424호, 2017.2.

12) 농우바이오 매각사례, 1967년 설립된 종자(種子) 회사로, 2013년 '300대 강소(強小)기업'에 선정되는 등 우량 기업이었으나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매각. 매각 대금 3,000억 원 중 약 1,200억 원을 주식 대납 형태로 상속세 납부함

III. 기업상속공제 사후요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성(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을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¹³⁾

- 기업은 지속가능하며 장수할 수 있지만, 경영자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어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2대, 3대에 걸쳐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빈번함
- 사전 준비 없이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막대한 상속·증여세 등으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임

□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고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는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켜 창업주들은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음
 -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되며, 상속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이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큰 상황

○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은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한 기업상속공제의 유명무실화¹⁴⁾이며,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제도는 적

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음

- 기업상속공제의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기 때문임
- 2016 ~ 2020년 동 제도의 평균 이용건수는 92.8건, 건당 평균공제금액은 약 31억 원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세법개정은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유지의무를 완화했지만,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¹⁴⁾ 사전요건에 대한 개편은 포함하지 않았음

□ [사후요건 개선방안]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므로 개선되어야 함

○ 고유자산을 처분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기업상속공제의 취지를 퇴색시켜 사후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할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생존을 강구하는 기업 현실과 맞지 않음

○ 기업상속공제상 기업의 계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 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더 완화되어야 함

13) 삼일회계법인, "M&A ESSENCE",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0.8.

14) 2021년말 적용대상이 매출액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되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업종유지 요건 관련, 최근 플랫폼 기업이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기존 산업 분류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생존하려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에 업종유지 요건은 구시대적인 요건임

- 일례로 현대차가 스스로를 제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라고 칭하듯 제조업체는 제조를 기반으로 서비스업에 나서야 하기 때문임

○ 첫 번째, 업종유지 요건은 현재 중분류내 변경 허용에서 우선 대분류내 허용으로 개정하고, 추후 전면 허용으로 완화해야 업종변경이 기업의 고유 경영 의사결정이라는 점에 부합할 것임

- 2022년 시행령 개정시 적용요건 중 가업영위기간(10년)에서 업종이 대분류 내로 변경되어도 가업이 영위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개정했기 때문에 우선 사후요건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함

○ 두 번째,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현행 20% 이상 처분 금지에서 적격합병의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하는 것이 타제도(적격합병 과세특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장기적 개선방안]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기업상속 공제'로 명칭 변경하고, 적용대상의 모든 기업 확대,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기업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 전환되어야 함

○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기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적용대상보다 사후요건 중 고용유지를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함

○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함

-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 시 사망자(피상속인)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 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임¹⁵⁾

15)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 대상자산의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모두 합해서 과세해야 함. 장기간 처분하지 않는다면 과세할 수 없지만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고 고용의 유지와 확대를 권장하는 측면이 중요함

IV. 요약 및 결론

▣ **현행 기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 중 '자산 유지'나 '업종 유지' 규정은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은 핵심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급변하는 위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줄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결명의 과제가 되었음
- 특히,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장수기업에서 생존과 성공 전략을 찾아볼 수 있음
 - 기업의 장수를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해야 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임
-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세법상 유사한 목적을 지닌 제도(적격합병)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구현을 위해 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게 기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이 개선되어야 함**

-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임
 -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기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음
- 사후요건 중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므로 개선되어야 함
 -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생존을 강구하는 기업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상속공제상 기업의 계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더 완화되어야 함
 - 특히, 업종유지 요건 관련, 최근 플랫폼 기업이 산업간 경계를 허물면서 기존 산업 분류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생존하려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에 업종유지 요건은 구시대적인 요건임
- 첫 번째, 업종유지 요건은 현재 중분류내 변경 허용에서 우선 대분류내로 개정하고 차후 전면 허용으로 완화해야 업종변경이 기업의 고유 경영의사결정이라는 점에 부합할 것임
 - 2022년 시행령 개정시 적용요건 중 기업영위기간(10년)에서 업종이 대분류 내로 변경되어도 기업이 영위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개정했기 때문에 우선 사후요건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함

- 두 번째,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현행 20% 이상 처분 금지에서 적격합병의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하는 것이 타제도(적격합병 과세특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영,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함**
- 기업상속공제는 가업이 아니라 기업의 승계라는 측면에서 명칭을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기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연도별)”.

삼일회계법인, “M&A ESSENCE”,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0.8.

장석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 과제”, 국토 제424호, 2017.2.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2021.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2년 05월 2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